전문가토론회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0년 11월30일 오전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 최|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사 회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 인사말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 제

❶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❷ 국제결혼과 인신매매법의 관련성 돌아보기

/ 권미주 팀 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❸ 해외 사례를 통한 외국인 피해자보호 정책 방향

/ 박수미 소장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❹ 인신매매법과 성매매법과의 관련성

/ 정미례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토 론

□김현미 교 수 (연세대학교)

□김인숙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백기 사무국장 (탈시설정책위원회)

□최현모 대 표 (한국이주인권센터)

□이현숙 상임대표 (탁틴내일)

◈ 종합토론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인 사 말

20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국제결혼 이주여성인 쩐타인란의 죽음에 가슴이 먹먹하여 대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 쩐타인란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베트남 농촌의 어려운 형편에 어머지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싶어 한국 남자의 베트남 신부가 될 결심을 한 그녀. 나고 자란 베트남을 떠나 한국의 남자의 아내가 된지 한 달여 만에 쩐타인란은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남편과 결혼중개업체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음 날 쩐타인란을 화장했고, 쩐타인란의 어머니는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위로금 봉투와 택배로 딸의 유골을 받았습니다.

딸이 떠나간 자리를 보려고, 채 한달도 안 되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이었기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사실이라도 알고 싶어 한국에 들어온 쩐타인란의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라는 말은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다문화대책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과정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2007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합법화시킨 반면 이들을 규제하거나 이주여성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이 한국과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영업 목적의 결혼 중개업은 불법인 반면 한국에서는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규정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신매매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해 인신매매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특히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을 담는 자리인 만큼 기대가 높습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소라미 변호사님, 권미주 팀장님, 박수미 소장님, 정미례 대표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현미 교수님, 김인숙 변호사님, 이현숙 상임대표님, 조백기 사무국장님, 최현모 대표님 고맙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이영순 여성위원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11월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발제 1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및 취지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형법」 제31장에는 '추행ㅁ간음ㅁ영리 목적의 약취ㅁ유인죄'(제288조)[1], '국외이송목적의 약취ㅁ유인'(제289조)[2], '결혼목적의 약취ㅁ유인죄'(제291조)[3]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범죄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또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법')에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제2조 제1항 제3호)[4]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ㅁ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1) 형법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한 법률」[5]에도 아동ㅁ청소년 매매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인신매매관련 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특별법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규정으로도 상당부분의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형법상 '약취ㅁ유인죄'가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부녀매매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2005년 16건, 2006년 6건, 2008년 5건, 2009년 8월까지 3건으로 지난 5년간 30건이 발생했다. '국외이송목적 약취ㅁ유인죄'는 지난 5년간 총 14건에 불과하다.[6] 이와 같이 현행 형법상 약취 유인 관련 법규정이 현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못해 범죄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특례법 제정을 통해 형법 제288조의 '영리 등을 위한 약취ㅁ유인ㅁ매매 등' 제289조의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죄와 기타 산재되어 있는 인신매매범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권피해 사례를 인신매매범죄로 포섭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범죄의 발견 및 처벌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최근 한국사회는 거주 외국인이 100만이 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등 이주의 목적과 통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과정에 수반하여 인권침해적인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본 특례법 제정을 통해 특히 국가간 이주 과정에서 착취 목적으로 인신을 매매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토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법, 특가법, 아동복지법, 성매매법 등은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법을 통해 인신매매피해자를 본 법에 의한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까지 모두 포괄하여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내용이 모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수사와 재판절차상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상 특례, 특히 외국인인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체류자격 보장, 의료비 지원 및 생계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특례법을 통해 인신매매 범죄를 구체화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통일적으로 보호하도록 함으로서 인신매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와 수사와 재판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 제9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2009년 국회 여성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방향」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2 무엇을 인신매매로 포섭하고자 하는가

1. 인신매매의 개념

1) 정의규정

본 법에 의한 인신매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착취 또는 영리 목적의 존재 ② 수단행위, ③인신의 인계가 필요하다.

>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취업 및 체류자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ㅁ약속하여 대상자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안 제2조 제1항 제1호)

2) 구성요건의 완화_ 실력적 지배 불요

형법상 약취ㅁ유인의 죄[7] 또는 성매매법상 인신매매죄[8]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는 본 법의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았다. 실력적 지배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한다면 현재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신침해적인 인신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력적 지배요건을 완화한 만큼 본 법에 따른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형법(특가법)과 비교하여 하향 조정하였다. 즉 형법 제288조의 약취ㅁ유인죄는 특가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특가법 제5조의 2 제4항), 본법에서 정하는 인신거래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각각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법적용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3) 용어의 전환 제안; 인신매매 -> "인신거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기존의 인신매매범죄보다 넓은 범죄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라는 용어 대신 "인신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존재한다. "인신매매"하면 "납치ㅁ감금"을 떠올리는 편협한 인식을 "인신거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

---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 38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ㅁ유인등)]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8) 각주 4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규정 참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으로서 확대할 수 있고, 더불어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법적용 및 집행관행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본 법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아동 등에 대한 인신매매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단행위 없이도 인신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2. 착취 또는 영리 목적

인신매매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목적이 필요하다. 이는 형법 제2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간음, 영리 목적"과 "추업사용 목적"을 포괄하면서 나아가 "장기적출,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까지 추가했다. 또한 본 법은 "성착취"의 개념을 단순히 '성매매'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성적 착취 행위가 포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장 규정하였다. (안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반의사 성교행위
나. 반의사 구강ㅁ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게 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라.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나체, 자위행위,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ㅁ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는 행위
마.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ㅁ약속하고 위 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바.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하는 행위

이와 같은 성착취 정의 규정을 통해 '성매매' 이외 다양한 성착취 행위를 인신매매로서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보도되었던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기 위해 이주여성을 제3자와 위장결혼시켰 이주케 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관련 사례〉 "베트남 여성 제3자와 위장결혼시킨 후 성적노리개 삼은 회사대표"[9)]
경북지역 한 택시회사와 건설회사 대표인 J씨(54)는 2006년 베트남에서 맞선을 본 베트남 여성 A씨(19)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후 제3자와 위장 결혼시킨 후 경북지역에 위치한 자

9) 2010. 5. 24. **동아일보**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신의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며 3년여 동안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유부남인 J씨는 A양을 데려오기 위해 서울과 대구 등 2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공모했다. J씨는 A양과 위장결혼한 제3자에게는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A양이 도망가지 못 하도록 한국여성을 고용해 감시까지 했다.

또한 바목의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하는 행위" 규정을 두어 취약한 지위의 여성들이 대리모 등으로 유용당해 재생산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성착취"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인신매매범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한국에서도 "현대판 씨받이"사건으로 보도된 바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20년간 불임이었던 한국인 부부가 협의이혼한 뒤 그 남편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하여 2딸을 출산케한 뒤 한국인 부인과 재결합하여 두 아이를 친자인것처럼 키운 사례이다. 이혼을 당하고 두 아이까지 빼앗겼던 베트남 여성은 두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를 원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묻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3. 폭행ㅁ협박ㅁ위계ㅁ위력 등 수단

본 법에 따른 인신매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취업 및 체류자격 등 경제활동기회를 제공ㅁ약속하여"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인신매매를 포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적시하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규정하였다.

1) "위계"(제2조 제2항)

1. 근로조건 및 계약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혼인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보를 누락ㅁ왜곡ㅁ날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진정한 혼인을 가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구체화하였다.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보통 "가수로 취업시켜 주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속아 한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한국의 유흥업소 또는 미군기지 근처의 클럽에서 가수가 아니라 유흥 접객 업무 또는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 내용 이외에도 급여의 정도, 휴가일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애초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통상 단순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강요 정도로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인신매매 범죄의 수단인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명히 하고자 1호를 규정하였다.

2호 규정은 “결혼”이 위계의 수단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결혼을 이용한 기망행위의 주체는 결혼을 중개하는 자, 결혼 당사자 모두가 될 수 있다. 결혼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의 직업, 병력, 장애유무 등에 대하여 왜곡되었거나 거짓인 정보를 전달하여 결혼이주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취득한 경우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또한 결혼 당사자인 한국인 남성이 진정한 혼인의사도 없으면서 이주여성을 노부모의 간병인으로 노동착취를 할 목적으로 결혼을 이용하였다면 역시 인신매매가 성립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 “결혼이주”가 하나의 결혼 풍속도로, 이주의 한 통로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를 인신매매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인신매매피해자로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입법취지이다.

2)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 이용”(제2조 제3항)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항공권 등을 압수 또는 제공받아 반환하지 않는 행위,
2. 신원보증 철회, 출입국위반사실의 통지 등 체류자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강제퇴거명령 발부 대상이 되게 하는 행위 또는 이를 행하겠다는 언행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였다.

이주민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입국시 취득한 귀국 항공편 티켓을 압수하여 반환하지 않는 행위, 사증 발급의 기초가 된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행위나 그러겠다는 협박,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겠다는 언행은 폭행ㅁ협박에 비견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신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포섭하고자 한다. 미군기지 부근의 클럽의 업주가 고용한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 보관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4. 인계행위 등

본 법은 착취 또는 영리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인신을 인계하고 인계받는 행위”를 인신매매를 한 자로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간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과 특가법[10]에서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송목적만 처벌하도록 규

10)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정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국외에서 국내로의 이송도 처벌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또한 인신매매를 한 후 인신매매대상자를 착취의 대상이 되게 한 경우, 영리를 취득하는 경우, 상해 또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케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도록 하였다.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인신매매대상자를 모집, 운반, 은닉한 경우에도 인신매매를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규정했다.

제23조(벌칙) ①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국외로의 이송 또는 국내로의 이송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인신매매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벌한다.
1. 인신매매대상자를 폭행ㅁ상해ㅁ감금ㅁ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인신매매를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인신매매대상자를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의 대상이 되게 한 경우에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인신매매대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인신매매대상자를 모집, 운반, 은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인신매매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를 한 자의 범죄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인신매매 피해의 정도, 수사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인신매매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관여한 허위문서작성,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인신매매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인신매매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국가간ㅁ계층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정도로 취약한 지위로 전락하는 자들의 출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취약한 상황에서 행한 인신매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취약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았을 의사표시로서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어려우며,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반면 상대방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취한 뒤 행한 인신매매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더욱 가벌성이 중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인신매매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고자 제3조 1항의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인신매매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사 인신매매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허위문서작성,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 등에 일부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법 규정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좀더 적극적으로 공적 기관에 호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인신매매 범죄가 수면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책임

1. "인신매매피해자"의 범위

본법은 인신매매피해자를 본 법에 의한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까지 포괄하였다. 이로써 형법, 특가법, 성매매법 상 불충분하거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가능케 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절차상 보호 규정, 적극적 보호 조치 내용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신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말한다.
가. 동법 제23조
나.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호(아동 매매)
라. 아동ㅁ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아동ㅁ청소년 매매행위)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2. 출입국상 보호 조치

1) 소극적 보호_ 강제퇴거의 유예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종료시까지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금지 규정을 두고, 검사뿐만 아니라 인신매매피해자 당사자 및 그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이 직접 강제퇴거의 유예 및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귀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강제퇴거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범죄와 관련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이외 인신매매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중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7조(강제퇴거 유예 등) ① 외국인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情況)을 고려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 또는 그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시설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또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 또는 그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시설의 장은 해당 외국인이 인신매매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국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이 인신매매범죄 피해로 인한 다른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적극적 보장_ 체류자격 부여

강제퇴거 유예 또는 보호일시해제라는 소극적인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그 기간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때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수사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제19조(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후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 인신매매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귀국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이 인신매매범죄 피해로 인한 다른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항을 준용한다.

3. 귀국지원, 의료보호, 생계지원

제20조(귀국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외에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등이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외 공관장에게 해당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 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귀국비용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의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생계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피해자의 생계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수사ㅁ재판 절차상 특례

1)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상담소에 연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11조)

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신뢰관계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인신매매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외국인 등인 경우에는 의무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적으로 신뢰관계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3) 재판 진행시 인신매매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4) 수사기관은 외국인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수사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등 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8조)

4 기타

1.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

인신매매범죄의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가능하도록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나아가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제5조) 또한 인신매매범죄 담당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수사를 재고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3조)

2.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무효

인신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인신매매피해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규정하였다.(법 제16조) 인신매매범죄자가 아니라 제3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제16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첨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신매매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취업 및 체류자격 등 경제활동기회를 제공ㆍ약속하여 대상자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
나.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이하 “아동 등”이라고 한다.)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

2. “성착취”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 반의사 성교행위
나. 반의사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게 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라.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나체, 자위행위,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는 행위
마.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위 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
바.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하는 행위

3. “강제노동”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사용자의 의지대로 강요하는 행위
나.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 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근로하게 하는 행위

4. “인신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말한다.
가. 동법 제23조
나.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호(아동 매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라. 아동ㅁ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아동ㅁ청소년 매매행위)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1. 근로조건 및 계약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혼인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보를 누락ㅁ왜곡ㅁ날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행위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 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항공권 등을 압수 또는 제공받아 반환하지 않는 행위
2. 신원보증 철회, 출입국위반사실의 통지 등 체류자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강제퇴거명령 발부 대상이 되게 하는 행위 또는 이를 행하겠다는 언행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인신매매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를 한 자의 범죄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인신매매 피해의 정도, 수사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인신매매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관여한 허위문서작성,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 범죄의 예방과 근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처벌,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③ 전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여성가족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고용노동부장관
4. 보건복지부 장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6.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원스탑 서비스)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 위원이 되는 각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원스탑서비스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국가는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사범의 수사 및 검거와 관련한 국제협력
2. 인신매매에 관련된 사법제도, 수사기법,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교류
3.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국적, 거주 확인 요청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회신
4.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출신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행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여행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5. 타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경우, 그 정보의 사용에 제한을 요청한다면 그 요청의 수용

제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신매매행위
2. 인신매매대상자를 모집, 운반, 은닉하는 행위
3. 인신매매행위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을 위한 수사 및 재판 절차,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1조(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신매매관련 지원시설ㅁ인신매매피해상담소 및 쉼터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인신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동법에 따른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
4.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수용시설
6.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7.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사기관 등 교육) ①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2.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3. 법무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4. 외국인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내에 귀화한 자
5.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인신매매피해자의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인신매매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인신매매피해자는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인신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인신매매피해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퇴거 유예 등) ① 외국인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情況)을 고려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 또는 그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시설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또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 또는 그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시설의 장은 해당 외국인이 인신매매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국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이 인신매매범죄 피해로 인한 다른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제18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수사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등 본 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해서 필요한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종료된 후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 인신매매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귀국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이 해당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 이외 다른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항을 준용한다.

제20조(귀국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외에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등이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외 공관장에게 해당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 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귀국비용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의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생계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피해자의 생계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벌칙) ①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국외로의 이송 또는 국내로의 이송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인신매매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벌한다.
1. 인신매매된 자를 폭행ㅁ상해ㅁ감금ㅁ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인신매매를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인신매매된 자를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의 대상이 되게 한 경우에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인신매매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조(벌칙) ①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인신매매된 자를 모집, 운반, 은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조(상습범) 제24조 내지 제25조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제27조(미수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은닉,도피) 제24조 내지 제2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조(예비,음모)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1조(자격정지) 제24조 내지 제27조 또는 제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몰수,추징)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발제 2 】

국제결혼과 인신매매법의 관련성 돌아보기

권미주 팀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국제결혼과 인신매매법의 관련성 돌아보기 11)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1 들어가는 말

2010년, 이주여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진 슬픈 소식 중 한 가지로 기억되는 것은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의 죽음과 몽골여성 강체첵의 죽음이었다. 탓티황옥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은 남편에 의해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한 베트남 여성이다. 강체첵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 피해 온 친구를 보호하다 그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올해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고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여성'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과 가족을 분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으나 개인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가족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최근 2,3년 사이 우리사회는 다문화라는 말을 유행처럼 사용하여 왔고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 내지 사업 또한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눈에 보이는 한국사회의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는)를 풀 해법을 다문화 가정에서 찾고자 하는 한편,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문제가 서구와 같은 인종문제로, 즉 사회의 불안적 잠재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한 사회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적용된 구체적 정책적 사례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조례 등에서도 드러났던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때의 그 가족 구성원을 한국남성과 가난한 동남아국 출신의 외국여성과 그들의자녀로 규정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결혼에 대해 그 해결점을 가정에서, 가족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제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의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가정 내에서의 여성으로만 그들의 존재가치를 규정하려 하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문제는 가

11) 본 원고는 지난 5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김춘진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의 원고를 약간 수정하여 축약한것임을 밝힙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여성 개인의 인권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정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지, 여성 개개인의 인권적 문제를 덮어둔 채 가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다문화라는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가정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국제결혼이 일반화되었다 할지라도, 사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성들이 가지는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보다 강화되고 있는 체류관리 지침 내지는 국적을 받기 위한 교육의 강화, 조건의 강화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서의 국제결혼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결혼 역시 단지 사인간의 선택적 상황으로 간주하며, 이주를 선택한 여성 개인에게 이 국제결혼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태도이다. 사실,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경제질서의 재편과 아울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급격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은 매매될 수도 있는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부재한데 따른 것이다. 사회가 생각하는 일반적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과 인신매매를 결부짓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제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한다면 어떤 지점과 과정에서는 국제결혼 역시 교묘한 국제 인신매매로 결론내릴 수도 있다.

2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으로의 국제결혼

과거 국가 간 이주에 있어서 여성은 고국에 남겨지는 자이거나 남편과 가족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자(tied-mover)로 취급되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이주를 이야기할 때 여성의 이주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졌었다. 더군다나 이주에 관한 통계에서 성별통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성 이주자의 수를 추산하는 자체가 어려웠으며 이것이 여성의 이주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 요인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의 요인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가 더욱 급증하면서 그리고 그 이주 원인의 70%이상이 빈곤으로 인한 생계와 일자리를 찾는 이주로 진행이 되면서 이주를 하는 여성의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빈곤의 여성화"로 인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양적으로 본다면, 아시아에서는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주체적인 이동의 주체가 되면서, 여성이주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및 젠더에 따라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구별되는 특징을 갖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노동자로, 성산업 서비스 종사자로, 때로는 국제결혼 당사자로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이주가 주를 이룬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라는 새로운 흐름은 국제결혼의 증가는 물론, 가사노동 등 보살핌 노동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고 있으며, 이주 영역에서 젠더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적국에서는 간호사(간병인), 가정부, 연예인 등 대표적인 여성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결혼이주도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간호사’와 ‘가정부’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면, 아시아 지역 내 유입국에서는 ‘가정부’와 ‘유흥업 종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도 이주의 여성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개발도상국의 이주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들의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실업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국의 노동력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 이주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 극도의 가난과 지속되는 빈곤의 상황과 딸들이 돈을 벌어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이 결합되면서 여성들에게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이 부여되었다. 가족들은 가구원 중 목적구(유입국)으로의 입국과 취업이 용이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려는 가족전략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이주자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남성의 국내이주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외국인 여성들은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 성산업이나 엔테테이너, 혹은 가사노동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 근래에 들어 결혼을 통한 이주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외국들의 경우 “남성=노동이주, 여성=결혼이주” 라는 이주의 성별 구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국내로 유입되어 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인종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경제적인 지위나 계급의 차이에서 비롯된 무시와 편견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기에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과 폭력이 더해진다. 더욱이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오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갈등, 한국사회의 봉건적인 가족문화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의 위험이 더해진다. 이처럼 국제결혼은 인종, 국적, 계급의 위계가 젠더의 위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하나의 논리로 단일화 할 수 없는 복잡한 층위를 구성하며, ‘국제결혼의 여성화’는 젠더와 지구화 및 이주현상으로부터 복합적 영향을 받고 있다.[12]

12) **정기선 외**(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p6-7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3 국제결혼, 인신매매인가? 인신매매적인가?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물론 모든국제결혼을 "매매혼적 결혼" 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매매혼적 성격'만 부각하면 모든 국제결혼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도 있지만, 개발도상국 여성과 개발국 남성 사이에 행해지는 국제결혼의 경우, 다분히 인신매매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정의 가운데 인신매매를 처음으로 정의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선택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13]의 정의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위협, 폭력의 사용, 강제, 유괴, 사기, 속임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권력의 남용, 양자의 위치를 악용, 주고받는 임금과 이득을 오용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 수송, 이동, 수령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의정서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피해 여성들이나 소녀들이 처벌당하거나 검거당하는 일이 없이 최소한의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의정서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의한 중개방식의 국제결혼,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 의한 중개, 세 번째는 개인을 통한 중개이다.

중국 동포와 한족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필

---

13) 이것은 2000년 11월 유엔 제15차 총회에서 채택한 의정서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전문화되고 국제화되는 국제조직범죄를 비롯한 범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게 되면서,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각각 2003년 9월과 12월에 발효되었고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서명만 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보호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박지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2007년 이하 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p.97-98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리핀 여성의 절반 정도와 일본, 태국 여성들 대다수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한 결혼의식을 치루고 국내에 입국한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여성들은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중개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인권침해가 심하게 일어나며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상업화된 중개업체의 중개과정에서 두드러진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중개업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모집과정에서의 문제- 인권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모집광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인권침해적인 광고(예: '초혼, 재혼, 장애인도 가능' ,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의 여성비하적이고 인격모독적인 광고들을 서슴치 않아 왔다. 이는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문제로 여성 전체의 문제이며, 인간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미국의 〈200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변에는 자칭 국제결혼 전문가들이 걸어 놓은 이런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힘든 한국총각들을 국제결혼으로 유혹하고 있다" 며 현수막 사진과 함께 동남아 여성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결혼이 지난 5년간 4만 3,121명으로 3배나 급증했고, 이들 중 72%가 한국 남성이 동남아시아나 몽골 여성과 결혼한 케이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신매매성 광고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 말레이시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결혼을 했던 일부 여성들이 성착취나 강제노동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현수막 단속에 나섰고, 국제결혼이 인신매매성 요소가 있다는 지점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집과정에서의 문제는 광고상의 문제 뿐 아니라 여성들의 합숙과정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 문제등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여성들을 이렇게 상품화하는 업체들에 의해 여성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보이는 남성들에게 팔려오듯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1)[14]

캄보디아 여성 Y씨(20세)는 시골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사는 집이 너무나 형편없고, 남편이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여, 당시 다른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남편은 50세였고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90세가 된 노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 결혼이 성사된 것은 평소 아들의 결혼을 바라던 Y씨의 시아버지에게 결혼중개업체에서 당신

14) **이하에서 언급하는 모든 사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2008년 발행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모음집인 <적응과 폭력사이에서>에서 발췌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의 아들을 결혼시켜주겠다며 설득하였다. 그래서 Y씨의 시아버지는 농협에서 대출 1,500만원을 얻어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캄보디아 여성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캄보디아 시골에서 좀더 안락한 결혼생활을 꿈구며 시집온 Y씨가 같이 살아야 하는 집은 그야말로 캄보디아에서 살던 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농촌이었다. 게다가 남편은 간질이 있어 처음 남편의 발작을 보고 Y씨는 도저히 자기는 살 수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딱하게 여긴 동네 어르신들이 이 Y씨의 시아버지에게 빚도 지고 했으니 이 여성을 동네의 다른 총각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면서 돈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하였고 시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여 며느리를 동네 다른 사람의 집에 시집을 보내면서 돈을 조금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일이 쉽게 성사되지 않아 Y씨를 다시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 Y씨가 자기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며 집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강력하게 저항하여 결국 보호시설에 보내게 되었다.

사례2)

21세인 베트남 여성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 후 바로 입국하였다. 입국하자마자 임신을 하였기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따져 물었더니 결혼 전 합숙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자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며 막무가내로 여성과 바로 협의이혼을 하고는 여성을 내쫓았다. 여성은 중개업체를 찾아갔지만 중개업체에서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들에게 결혼비용을 반환해달라고 하니 자기들에게 손해라고 이야기하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2) 결혼희망자의 관리 및 통제 및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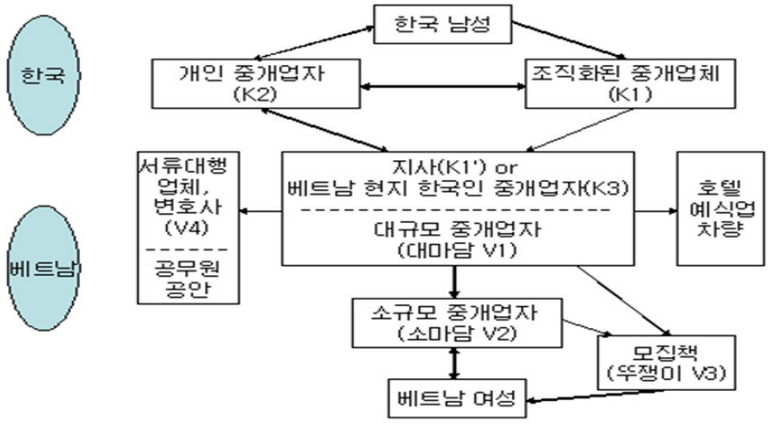
현재의 결혼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맞선을 준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된다. 현지에서의 결혼식 이후에도 한국으로의 여행서류 준비과정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못한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부채 예속의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단속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맞선을 진행해야 하며, '일대일 맞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수백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맞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 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의 이윤 추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결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결혼 중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일반적으로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15]

표 3.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결혼의 중개 시스템



이러한 단계를 거쳐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누구에게서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며, 중개업체들은 현지에서 여러 단계의 연결망을 통해 결혼과정을 추진하므로 그에 따른 발생비용을 과다한 수수료로 결혼당사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2005년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의 44%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때대로 부정확하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이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선택되기 전까지는 남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며, 여성은 최종 선택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선택한 남성의 신상에 대한 간략한 정보(결혼여부, 나이,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를 제공받지만 이조차도 허위인 경우가 있다.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노동자를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직업을 속이거나, 매달 친정에 다달이 돈을 부쳐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상 본국으로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심지어 남편이 결혼하기 이해 진 빚까지 갚느라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성들로서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확인할 공식 서류나 통로가 없기 때문에 소개되는 그대로를 믿고 모험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나 브로커들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느 계약서나 기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

15) 소라미, <이주여성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9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원 교육 자료집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사례3)

21세 베트남 여성인 O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에 등록하고 남편과 선을 보았는데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이 거의 없었다. 남편이 본인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여 너무 말이 없어 이상하다고 중개업체에 이야기하였지만 중개업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남편이 원래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지금 심하게 수줍음을 타서 그런 것 뿐이라고 하였다. 단지 내성적일 뿐이지 한국에 가면 집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데 직장도 탄탄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만약 결혼을 해서 3개월간 살다가 정 살지 못하겠으면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 결혼으로 돌아와서 보니 남편은 심한 언어장애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O씨는 결혼 1달만에 협의이혼을 원했다.

사례4)

H씨는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 결혼정보업체에서 남편에 대해 말해주었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인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청해왔다. 본국에서 소개를 받을 때에는 남편이 사무직 직장인이며, 아파트를 전세에 살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으므로, 결혼을 하면 친정에 송금도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된다고 얘기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남편이 사는 집은 허름한 연립주택에 월세였으며, 집안 살림도 모두 낡아빠진 것들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버는 돈이 적기 때문에 친정에 돈을 보내줄 수도 없다고 하여서, 업체의 설명만 믿고 본국에서 이미 빚을 얻어 결혼을 한 H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4) 결혼 이후의 중개업체에 의한 사후관리

- 여성에 대한 감금 및 협박/가정생활에 대한 간섭

또한 여성들은 결혼 이후 한국에 입국해서도 중개업체로부터 결혼생활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생활에 간섭을 받으며 제약을 받는다. 그것이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개업체는 남편이나 시집 가족들에게 여성이 외출하지 못하도록 하라, 자국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라, 여권이나 신분증을 본인에게 주지 말아라 는 등의 일종의 코멘트및 지침(?)을 남편이나 시집가족에게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결혼이주여성이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한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돌아가겠다는 여성들에게는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거나, 본국의 친정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거나, 한국으로 입국시 일종의 보증금 용도로 지불한 현금 내지는 땅문서 등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머물 수 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사례5)

결혼한지 7개월이 좀 넘은 여성 A씨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도저히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의사를 남편과 결혼중개업체에게 밝히자 결혼중개업체는 A씨에게 결혼에 든 비용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고향 친정집에 사람을 보내어 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심지어 A씨의 여권도 결혼중개업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사례6)

전라도 섬 지역으로 시집을 온 캄보디아 여성 K는 20세이고 남편은 70세였다. 남편은 염전 일을 했는데 K가 시집을 오자 자기는 이제 몸이 힘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으니 K가 일을 하고 번 돈으로 생활을 하자고 하였다.K가 한달에 월급으로 80만원을 받아서 그 중에 40만원은 본국으로 송금하고 40만원은 자신들의 생활비로 쓰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본국에 보내는 돈이 너무 많다며 20만원만 보내고 20만원은 자신의 용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노동을 견디지 못한 K는 집을 나와서 결혼중개업체에게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중개업체는 K를 식당에 취직시켜 주고는, 남편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니 K가 버는 돈을 본인들이 가지겠다고 하며 월급을 받아 챙겼다. 식당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지역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5)결혼이후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적 문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여러 가지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30% 가량의 여성들이 물리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서적 언어적 폭력까지 더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50%가량이 만성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 무형의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학대, 심한 정서적인 괴롭힘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며 여성들 스스로 팔려왔다라는 의식이 들게끔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하여서는 그 체류권에 대한 보장이 전적으로 남편, 또는 시집식구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인권침해적인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본 인권침해 실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이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상에서 인신매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 인신매매의 범주에 포함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이해는 결혼이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만 문제를 국한시켜 보지 않는데서 출발할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국제결혼은 이미 상업화된 시장에서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불공정한 계약, 과다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기, 유혹, 취약한 상황의 여성에 대한 갈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얻기 원하는 한국의 남성들과 국제결혼을 이주의 수단으로 하여 국내로 이주해오는 외국 여성들의 본질적인 동기를 충족하고 자칫 인신매매의 수렁으로 빠지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4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을 내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핫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국제결혼의 문제를 다문화가정의 문제로 보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문제는 다문화가정은 문제해결 내지 정책접근적 차원에서 보기 이전에 먼저 여성 개인의 인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의 빈곤, 빈곤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이주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주과정 또는 이주 이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은 결혼 이후 가정 내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적 상황에 처하기도 하나 이미 결혼과정에서부터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결혼중개업에 관한 관리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11월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결과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합법성만을 제공하였을 뿐 실제적으로 바랐던 바 이들을 규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여성을 보호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버렸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과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상업적 결혼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만이 이를 허용함으로써 상충되는 모순을 끌어안고 출발한데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다시 여성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규정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주여성 운동 단체에서도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것이 인신매매법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제규약 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포섭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바람에 대한 표현이며 또한 국내 결혼중개업법으로만은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중개업체 및 극히 일부이긴 하나 고의성을 가지고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가족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1) 인신매매의 정의에 대하여

이미 발의되었던 김춘진 의원안과 비교하여 이번 발의안에서 인신매매의 정의안에는 '강제결혼'이라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는 인신매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착취 또는 영리 목적), 수단행위, 인신의 인계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목적조항에 강제결혼을 정의하는 것은 자칫 모든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범죄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면이 있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보았을때, 제2조 2항에서 '위계' 의 정의를 통하여 결혼이 착취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인신매매의 주체자를 단순히 결혼중개업자로 한정(왜냐하면 강제결혼을 정보의 누락, 왜곡 등으로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만 한정할 경우 인신매매의 주체자는 중개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 않고 결혼 당사자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결혼당사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또는 아내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간병인과 같은 역할만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및 의도, 태도와 상관없이 남편에게 예속된 상태로 자신의 체류 및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 각국의 인신매매 정의를 살펴볼때 인신매매란 단지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간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수단을 통해 강제로 착취하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 물론 이것이 사회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법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 객체 등을 규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번 제정된 법이 근간이 되어 개정되고 진화해간다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현대 사회에서 인신매매라는 것이 가져야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인간 존중 차원의 접근적 관점에서의 보다 포괄적 정의는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2)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국제결혼을 인신매매의 한 범주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결혼에 의한 피해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적극 해석, 포섭하여 이들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류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때 체류보장에는 취업자격 부여가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조사가 끝난 이후 여성들이 다시 강제로 귀국하거나 체류를 보장 받을 수 없다면 여성들은 누구도 피해자로서 나서거나 조사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다시 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은 법적인 문제를 여성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지며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여성들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종의 자활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였다.

---

16) 2009년 EU가 채택한 인신매매 방지 및 근절, 피해자 보호, 기본결정에 따른 인신매매 정의는 "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적인 수단이나 무력 또는 그 밖에 강압, 유괴, 사기, 속임수, 권력 또는 취약한 상황의 악용, 타인에 대한 통제를 갖는 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금전 지불이나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양도, 은닉,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명문화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동남아 국가중 필리핀은 가장 먼저 인신매매법안을 만든 국가(2003년)로 성착취,강제노동,노예,혹은 유사노예, 장기적출및 판매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희생자의 허락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국경내외에서 행해지는 알선,이송,이동,은닉 및 인수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필리핀 여성을 외국남성에게 배우자감이나 성매매의 용도로 금전적 혹은 그 외 다른 대가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인신매매된 사람을 희생자로 규정하여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오히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보다 포괄적 의미로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5 나가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위장결혼으로 치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 2의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멀고먼 다른 땅으로 찾아와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바라보는 시선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이 와중에 여성들은 때로는 한국사회에 무조건 적응해야만 하는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해야 하는 상당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들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소리를 내는 삶의 주인이 되어 한국사회에 그녀들 스스로의 필요를 말하는 능동적이고 당당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들을 두고 국제결혼에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여성들을 포함시켜야 할 상당한 이유들은 위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다 약자인 어떤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책임을 지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은 국적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세계화의 흐름이라는 구조 속에서 결혼 당사국들의 이해 및 한국사회 내의 사회적 변화와 흐름 및 인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모순덩어리인 국제결혼의 문제에서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더욱 증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울타리에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바람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져 부디 우리 사회가 인간이 인간에 대해 더 이상 착취와 통제를 가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춘 사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발제 3 】

해외 사례를 통한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정책 방향

박수미 소장(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해외 사례를 통한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정책 방향

박수미 소장(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1 들어가는 말

지난 6월,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 국제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당시, UN 인신매매 특별보고관(Joy Ngozi Ezeilo)은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의 국제적 양상과 이에 따른 국제 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맡아 "인신매매를 단지 범죄와 국경 통제 관점이나 단순히 이주라는 주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 즉 인권(Human Right), 범죄 통제(crime control)와, 형사 정의(criminal justice), 이주 및 노동(migration; and labour)등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보고관은, '인신매매방지 조치는 인신매매 피해자, 이주민, 국내난민, 난민 및 비호신청자 등의 인권 및 피해자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인권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지침1)'는 2002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이미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입법화하에서 실천하고 있는 해외 사례의 경우,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검거와 처벌 및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피해자들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조건적인 태도로 인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피해자 수요가 극히 드물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다.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 역시, 처벌과 보호의 무게를 균등하게 두어 서로의 상관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위 UN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피해자들의 '인권 신장'에까지 미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우리가 특히 견제해야 할 것은, '인신매매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기 위한 전략' 또는 '수단'으로서 피해자들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또 한번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1) 외국인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경제 활동을 전제한 체류 자격 보장'에서 시작된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 보호 정책의 목표를 '범죄자들에게 또 다시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17]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및 일시 보호 명령을 유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18]

성매매 방지법은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 내부 지침에도 영향을 끼쳐, '성매매 피해자들에게체류 자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 G-1비자는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 보장 차원의 성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여 입국한 '외국인 사범'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노예화시키고 있다.

덧붙여,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한국에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결정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협상을 시도하거나 자국의 가족들을 거론하며, 보복을 암시할지도 모른다.
또한 가해자들은 분명 피해자들이 아무런 경제 활동 없이 '쉼터에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 채', 귀국하거나 자신에게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다시 자신의 수하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다.

외국인 피해자 역시, 가족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경제 활동이 필요한 한 '인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보다 건전하고, 개방적인 현장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 노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업 전환의 기회를 법적으로 개방시키는 것이 피해자들의 사회 통합, 복귀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 회복은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시로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된 복잡,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딪히게 되는 가해

---

17) 2009년도 브뤼셀 유럽공동체위원회가 채택한 기본결정안에 포함된 인신매매방지 관련 법안(제10조 피해자 지원)에 따르면, EU회원국은 형사소송의 기본 틀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숙식 및 물질적 지원, 심리적 지원, 자문 및 정보를 포함한 필요한 진료, 피해자의 권리와 이해가 형사소송에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적절한 경우 통역 및 번역 서비스 등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지원)

18) 비록 출입국 관리법은 아니지만,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성매매 방지법에 의거, 성매매피해자에게 G-1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실행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자들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역할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국 조직적, 국제적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피해자들의 불법 가담 사실 역시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로 봐야 한다.

미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노동 및 이민법과 유괴, 노예, 불법 감금, 폭행, 구타, 중매, 약점 공격(pandering), 사기와 강탈에 관한 법의 위반'을 수반하는 행위로써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이루어진 **허위 문서, 불법 입국, 불법 노동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는 불합리하게 징역, 벌금형이나 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징역, 벌금형의 실질적인 처벌은 아니라고 하여도, 피해자를 '범죄 사실에 가담한 것'으로 취급, 형사 입건 처리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이송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 행위는 전적으로 범죄자들의 계획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과도한 비용을 피해자들이 떠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인신매매 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피해의 책임과 법의 위반 행위는 전적으로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

3) 조건과 차별 없는 피해자 지원 적용이 필수적이다.

미국[19]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민 상황을 불문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의 협의하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확인서(certification)를 발행하여 연방 및 주 기관 등에서 관리되는 프로그램이나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역시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확인서는, 수사 및 기소에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적 절차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2009년 7월 인신매매 비자법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조건으로 '유효한 비자 보유'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20]

---

19) **미국연방법(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제78장 제7101조부터 제7200조까지)에 따르면, 인신매매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을 크게, '외국에 있는 피해자'와 '미연방 내의 피해자'로 나누어 '미연방 내의 피해자'인 경우 안에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다.**

20) **국가인권위원회,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자료집**, 2010, p.121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4) 다각적 시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관리, 지원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에서 피해자들의 전문성, 역량성 직업 및 훈련 지원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기타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외국인의 경우 **피해자의 친척까지 입국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단, 연방 경찰이 신청할 수 있다.)

2009년도 브뤼셀에서 유럽공동체위원회가 채택한 기본결정안에 포함된 인신매매방지 관련 법안(총17조)에 따르면, '인신매매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소 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제6조 피해자에 대한 제재 미적용) 하고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인신매매범죄행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특별히 취약한 피해자로 간주되고, 성인은 피해자의 나이, 성숙도, 건강, 임신 여부, 장애, 기타 개인적·사회적 조건, 피해자가 당한 범죄 활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결과를 고려하여 개별 평가에 따라 특별히 취약한 피해자로 간주(제9조 **형사소송시 인신매매 취약 피해자 보호**)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피해자는 (a) 음성-영상 시설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터뷰 및 교차 조사와 같은 증거 제공 기간 시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직접 대면, (b) 기소의 핵심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 (c) 공개 법정에서 증거 제공, (d) 조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터뷰 반복 등을 지양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를 갖고 있다.[21]

---

21) **김춘진 국회의원**, 2009**여성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 방향-해외인신매매방지입법사례를중심으로-**」,p.173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발제 4 】

인신매매법과 성매매법과의 관련성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인신매매법과 성매매법과의 관련성[22)]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 인신매매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

1949년 유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협약'은 노예제와 노예제 같은 관행을 다루는 국제인권협정서 가운데 하나로 협약의 전문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인간의 존엄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성매매 범죄의 정의와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면, 1)합의여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하거나 유인 또는 유괴하는 자, 타인의 성매매행위를 착취하는 자 2)성매매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거나 제공에 관여한자 3) 타인을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여, 제공한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6항은 '협약 당사국들은 입법을 포함한 모들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인신매매와 여성성매매 착취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모든 형태'의 여성인신매매와 여성성매매착취를 거론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와 성착취가 존재하면 이는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초국적 성매매는 성산업의 팽창과 성장,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성적폭력의 증가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신매매 확산의 주요인은 빈곤으로 인한 성산업이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지만 인신매매업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성산업의 세계화는 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시장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섹스관광, 우편주문신부등은 가난한 여성들의 몸이 전지구적으로 상품으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결국 젠더화 된 성불평등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2000년 유엔

22) **본 원고는 지난 5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김춘진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의 원고를 약간 수정하여 축약한것임을 밝힙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예방 및 억제ㅁ 처벌에 관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의정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겨냥한 것은 ‘타인을 성매매함으로서 생기는 착취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성착취’로 인신매매범죄의 정의와 국가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사실상 유엔협약 최초로 인신매매를 촉진하는 수요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9조 5항은 입법을 비롯한 여러 조처들을 취하거나 강화하여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신착취,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거 2005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수요에 대한 결의안에서 ‘성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수요차단은 인신매매방지의 핵심요소’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착취자들을 저지하고 수요를 차단하는 모든 조처들-입법적인 조처를 포함하여-을 각국정부에 촉구하고 있다[23)]

이런 조치에 의해 2006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특별 보고관인 시그마후다 보고서, 특히 상업적인 성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권과 젠더관점의 통합에 의하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성매매는 대부분 인신매매 요건을 충족시킨다, 성매매 산업이 합법화된 협약당사국들은 합법화된 성매매조직들이 체계적인 인신매매를 쉽게 영속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세계 전역의 데이터들을 볼 때 성매매를 합법화한 협약당사국들은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성착취 수요와 인신매매간의 상관관계에서 성매매에 개입되는 경로나 성매매 현장에서 권력의 남용과 성별, 인종,민족,빈곤등 지위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성매매가 저연령화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를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각종형태의 착취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수요에 의해 조장된 착취행위가 인신매매행위로 이어진다는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며, 수요차단을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나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하지 말 것과 본국송환과 같은 제제도 받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와 인신매매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성별화 된 성산업구조의 특징은 성과 몸의 상품화로 여성들을 전지구적 성착취의 희생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2000년)에서 제시된 인신매매범죄의 정의와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면

제 3조 (용어의 사용)

▶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 납치 · 사기 · 기만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23) **모니카 오코너, 그리인힐리**, 2006,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관관계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 인용**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 착취는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포함한다. 위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위에 규정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는 이러한 행위가 위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였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성 인신매매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강압, 사기, 납치, 힘이나 지위의 남용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양도, 숨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가 이에 동의했건 또는 이를 인지했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절차를 통했건 간에 상관없이 성인신매매는□성적 착취를 동반할 때' 성립되며, 인권을 훼손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결국 '성착취'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아동에게 금품 제공, 강요, 기만 등을 통하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여성과 아동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성착취에는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 섹스 투어리즘, 강제결혼 등이 포함되고 그 경로 또한 다양하다.

의정서 9조 5항에서 국가 정당이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수요 착취를 조성하고 인신매매 증가를 초래하는 수요(demand)를 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정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타인을 성매매 함으로써 생기는 착취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성착취"다. 인신매매의 정의에서 의도적인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라는 개념은 인신매매 성립 여부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명기되며,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증명의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정서는 유엔 협약 최초로 인신매를 촉진하고 있는 수요문제를 다루고 있다. 9.6 항은 협약 당사국들이 "입법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거나 강화하여...인신매매로 이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신 착취,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명기한다(2000, 팔레르모 의정서).

2005년 여성지위원회의 수요에 관한 결의안은 유엔 반인신매매 의정서 9.5항을 강화하여 "성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수요 차단은 인신매매 방지의 핵심요소"라고 단언한다. 이 결의안은 각국 정부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상업적인 성착취가 여성과 소녀들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착취자들을 저지하고 수요를 차단하는"모든 조치들을 장려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2 한국의 상황

현재 한국은 성착취형 인신매매는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288조는 추행, 간음,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적조치가 있음으로 해석된다.

2000년 이후 급증한 성착취 구조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에 성매매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 여성을 지원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란[24]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위계, 협박, 폭력을 동원해 대상자를 꼼짝 못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라고 한다. 또한 청소년, 심신이 미약한사람, 중대장애인을 보호ㅁ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ㅁ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ㅁ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나아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이들을 돈을 주고 넘겨받거나 대상자를 모집, 이동시키거나 숨기는 행위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되어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인 협약이나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정도에 입각하여 볼때 한국은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신매매라는 현상이 통일적인 법적 체계 속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법체계 내에서 인신매매는 부녀매매, 영리약취유인, 직업안정법, 성매매방지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개별적인 법규들에 의해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실사회과정에서

---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인신매매는 성매매, 직업/취업/관광/결혼소개 등의 특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때 부녀매매죄로 표현되는 인신매매의 형사법적 규정은 매우 협의적이고, 현실적 용가능성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사회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의 다양한 문제적 특징을 수렴하여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 그 자체가 단일한 현상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성이나 노동에 대한 착취와 그 공통적인 기본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체계화,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게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범행의 범죄구성 요건상의 차이, 입증가능성의 차이 등등으로 인하여, 특정사건 또는 범죄자는 약취와 유인죄에 의한 형법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특정경우는 성매매방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 행정법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있다. 사법적 처리과정에서 인신매매사건이 형법으로 다루어질 경우에는 실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는 경향이 있고, 행정법으로 다루어질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량관계 및 사법적 처리 관행을 교묘히 이용하여, 인신매매 범죄를 약한 처벌에 그치게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취업을 빌미로 한 인신매매의 경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치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입증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형량 및 형벌의 형평성이 재고되어야 하며, 성매매와 직업소개행위 등과 관련법규와 그 형사법적 통제가 인신매매와 유기적 연관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가장 큰 배경적 요인인 직업/취업/결혼소개라는 형식적 외피 속에서 매매는 은폐되고 지속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정책방향과 대책수립 및 효과적 통제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을 미끼로 하는 대표적인 경로인 직업소개/알선사이트 등에 의한 사건들은 비록 직접적인 폭력성의 정도는 다른 경로에 비해서 약하지만, 피해자 규모면에서 보면 사건 당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경로유형이며, 전문적으로 범행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이들 경로관련자들은 점조직화, 음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잘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 외피와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자발성을 유도해 내는 경향이 많고, 조직적으로 범행입증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전형적 통제장치에 걸려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도의 지능적이며, 피해결과도 큰 이들 경로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현실적 과정에서는 판매자(알선매개자, 중개업자등)와 구매자가 필요적 공범관계이지만, 형사법적인 수준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거나 부각되지는 않기도 한다. 이는 현실적인 수사처리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인신매매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면서 매우조직화 되어져 검거가 어렵고 검거되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역으로 추적해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영리약취유인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판매자를 검거하지 않고 구매자만 주임으로 한 사건파악은 현실적으로 범죄사실의 축소 내지는 왜곡의 경향을 띄기 때문에 처리건수도 작고 처리결과도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착취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음과 함께 강제적 행위를 중심으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착취와 관련된 내용임을 볼때 인신매매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규율할 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범죄자들을 인신매매범죄로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성매매알선조직과 관련자나 최근 문제가 된 탈북여성들을 모집하여 일본으로 이송하고 이들에게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나 관련자들 또한 인신매매가 아닌 성매매알선행위등 위반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알고 있듯이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원인과 수요를 차단하고 국가가 가해자와 동조, 가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간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국가간의 동조와 협조를 통해 인신매매를 억제하기 위한(수요문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현상과 함께 이에 대응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인신매매관련 발생, 경유,도착,송출국가의 위치에 놓인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인신매매관련 법률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상황이다.

3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법적 규정력의 주요 방향

1)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신매매가 중대한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형법의 '약취유인의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각각의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시급함과 동시에 형법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신매매금지에 관한 장을 만들어 이곳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규정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인신매매관련 내용들이 제대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특히 특가법 제5조의 제4항은 형법상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ㅁ유인, 부녀매매, 피약취ㅁ유인매매이송, 이송자의 수수은닉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제5조의 2제 6항에서는 미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에서는 약취, 유인에 대한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특가법상에서는 제 5조의2 제8항에서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가법상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 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와 형법제 292조제 1항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의 특별법으로 작용하여 형법조문의 사문화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특가법의 제 5조의 제2제 4항은 삭제하고 미수와 예비, 음모행위처벌을 형법으로 편입시키고 형법의 제288조와 제 292조제 1항의 구성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인신매매와 성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인신을 거래하는 행위일체(성착취)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부녀매매,약취유인, 음행매개등을 묶어서 별도의 장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관계를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차용증, 선불금등의 문제를 개인적인 계약관계로 파악해서는 안되고 성매매착취구조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인신매매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성적자유에 대한 관용이 자유시장주의와 맞물려 성매매를 합법적인 노동으로 재구성하고 국가적 국제적 성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성매매산업의 발전은 남성구매자들이 여성의 종속성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성산업을 합법화하고 성매매여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관할하는 정부들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권력상실을 경험한 남성들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성산업을 용인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성장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성매매가 산업화되고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새로 제정되어야 할 인신매매방지법은 형법 및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소한 의미의 인신매매의 개념이 아닌 보다 확장된 의미여야 하며, 인신매매의 유형을 넓힐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 그리고 처벌 양형 또한 강화되어 인신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들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사법기관에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법률안이어야 할 것이다

2) 인신매매의 정의규정의 확대와 명확화[25] : 인신매매관련 범죄행위는 착취를 목적으

25) 동남아 국가중 필리핀은 가장 먼저 인신매매법안을 만든 국가(2003년)로 성착취,강제노동,노예,혹은 유사노예, 장기적출및 판매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희생자의 허락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국경내외에서 행해지는 알선,이송,이동,은닉 및 인수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필리핀 여성을 외국남성에게 배우자감이나 성매매의 용도로 금전적 혹은 그 외 다른 대가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인신매매된 사람을 희생자로 규정하여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로 위협적인 수단이나 무력, 또는 그밖의 강압, 유괴, 사기, 속임수, 권력, 또는 취약한 상황의 악용, 타인에 대한 통제를 갖는 자의 동의(부모나 후견인등)를 구하기 위한 금전지불이나 혜택을 주는 행위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동, 양도, 은닉, 또는 인수(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행위의 교사, 지원, 방조 또는 시도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신매매피해자에 의한 착취동의는 의도적이든, 실질적이든 인신매매범죄행위의 수단이 사용된 경우 부적절한 동의이며, 특히 18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범죄행위에 필요한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하며 법의 목적 또한 인신매매에 적극대응하고 인신매매를 발생시키는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안전을 기본으로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성착취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강압, 사기, 납치, 힘이나 지위의 남용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양도, 숨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가 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규정에서 성착취개념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성착취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합법과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가리지 않고 유입시키고 있다. 아동 성착취도 계속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관용 정도에 따라 실제로 엄청나게 확대된 성매

· **태국**

제6조착취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인신매매 범죄이다:

(1) 타인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자가 범죄자의 타인에 대한 착취를 허용하기로 한 협정을 충족하기 위해 폭력, 유괴, 사기, 속임수, 권력남용 또는 금전 및 이익 지급을 수단으로 타인을 알선, 매매, 행상, 이동, 억류나 감금, 은닉이나 수취하는 것 또는

(2) 미성년자를 알선, 매매, 행상, 이동, 억류나 감금, 은닉이나 수취하는 것.

제7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인신매매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1) 인신매매 범죄행위를 지원하는 것

(2) 인신매매 범죄자를 위해 재산 기증, 미팅 장소나 숙박소 제공하는 것

(3) 어떠한 방법으로 인신매매 범죄자의 검거를 돕는 것

(4) 인신매매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재산 또는 다른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는 데에 동의하는 것

(5) 인신매매에대한 범죄를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범죄집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타인에게 설득, 권유 또는 연락하는 것.

· **캄보디아**

제13조: 인신매매 및 교환의 정의

인신매매 및 교환의 행위라 함은 서비스와 사람을 포함한 어떠한 가치를 지닌 것의 대가로 타인에 대한 감독권을 불법으로 누군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것을 말한다.

인신매매 및 교환을 중개자로서 알선하는 행위는 인신매매 및 교환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 **말레이시아**

"인신매매"라 함은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운송, 양도, 은닉, 제공 혹은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매 시장은 여성과 소녀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성산업(sex businesses)은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구매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착취의 새로운 형태를 재빠르게 고안해 낸다.

결국 수단의 사용에 대해 아시아국가의 특성상 빈곤, 경제적 이유, 부모와의 관계, 권력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는 개인의 계약주체성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위계,위력등의 강제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해석할 것인가가 또다시 강제와 자발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강제를 물리적 위력(지배력)이나, 실력적지배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 선불금제공, 신체적 정신적,문화적,경제적 지배와 함께 궁박한 처지의 이용이나 정신적학대 및 강박등 자의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적 문제가 크게 작동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동의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성적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람을 이용할때에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으로 보아야 인권의 개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신매매의 정의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여 착취개념에 대한 확대된 내용 확보가 필요하다.

성매매와 인신매매와의 관계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수단이자 결과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할 때, 성매매행위에 성착취목적이 이미 포함되어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성착취에 성매매를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럴 경우 마치 성매매가 착취목적의 성매매와 착취목적이 아닌 성매매로 이분화 되고, 결국 강제적인 성매매와 자발적인 성매매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성매매를 성착취로 범주로 규율할 경우 현행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할수 있는 행위는 자발적성매매(흔히 단순성매매라고 일컫는다)만 남게 될 때 문제는 현행 법률에서는 자발과 강제로 이분화 되어 성매매행위자는 처벌된다는 점이다. 성매매처벌법에서 여성들의 비범죄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이 처벌되고 있는데 인신매매범죄에서 이를 어떻게 해소하여 두 개의 법률이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포괄하면서 성산업구조에 대응하면서 성매매를 줄여나갈수 있을것인가가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 **인신매매의 다양화와 입증의 어려움** : 인신매매는 공모, 교사, 지원,방조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중간매개자와 알선업자를 중심으로 알선행위등을 규제하다 보니 개인책임으로 떠넘기는 인터넷이나 개인간의 거래, 자유업종형태등으로 다양화 되어지면서 법망을 피해나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개인책임을 중심으로 법이 작동하게 되어 피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됨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 또한 자발적인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되게 되는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인신매매의 경우 이를 입증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는 더욱 어려움이 있는 범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죄로 인신매매행위에는 알선행위가 포함되어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건임과 동시에 인신매매가 가지는 구조와 실태가 이미 그 내부에 개인이 처한 궁박한 상황이나 여러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강제적인 위계,위력,지배,관리의 수단을 중심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될 경우 이는 여전히 강제와 자발을 구분하는 논의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인신매매피해가 동의여부를 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을 계속가지고 갈 경우 법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수단의 방식에는 광고,홍보,정보제공및 인터넷사이트개설의 방식등 다양하게 다변화되는 형태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3) 국가등의 책무: 인신매매범죄자들에 대한 조처와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를 중심으로 할때 교육, 홍보의 문제보다는 국가가 수요창출, 즉 성산업을 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에 적발되거나 단속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조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산업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할 때 이를 차단하고 억제하기위한 조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업소폐쇄와 함께 동종업종이 더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기 못하게 하는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부서의 배치나 전담인력의 확보등이 필요하다.
- 또한 법제정이나 정비와 관련하여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4)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문제 : 인신매매피해자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고 할때 이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처는 자국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안전이 의심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피해보상과 더불어 체류지원과 취업권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상설적인 논의와 협의, 대응할수 있는 상설협의구조는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인신매매를 정부차원에서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와의 상시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다. 범죄자를 찾아내고,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알게되었을 때 인신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나 주변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수사와 사건해결이 빠른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과정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관점은 가해자와 조직을 찾아내고 이들을 제대로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때, 처벌법과 피해자지원법을 따로 하여 관련부처를 분산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속에서 일관성있게 정책이 추진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실효성문제 : 한국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을 볼때 우리사회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신과 합의수준이 매우 낮고 범죄자들의 범죄의식도 매우 낮은 상황임과 동시에 피해자들 또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국제결혼이나 취업, 계약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이동되는 경우 또한 이를 입증하고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과 동시에 중간에 이를 도와주고 방조하는 세력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이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때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고(보복이 단순히 신체적인 위해나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거나, 알선업체들에서 인력을 보내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결국은 공범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결국 입증과 증거의 문제로 인해 인신매매범죄자들은 인신매매범죄로 규율되기보다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낮은 처벌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법률은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4 관점의 확립과 사회의식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법적 정의가 약하고 법의 실효성확보는 이후 집행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아동, 성적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관점이 여전히 취약한 우리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조차도 여전히 개인의 문제, 자발성의 문제로 귀결시킨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빈곤의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 여성의 빈곤화는 아동과 여성들을 더욱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구조는 성산업을 확산시키고 확대된 성산업 착취구조는 우리사회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을 접대,상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면서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전지구적인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토 론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토론 1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토론

김현미 교수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은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신매매의 국내, 국제적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이 법안이 소라미 변호사를 비롯한 NGO활동가들과 민노당 이정희 위원실이 주도하여 만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 현재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자는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1 인신매매 개념의 확장적 이해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데 관여하는 제도화된 네트워크 체제인 이주 산업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이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인신매매형 이주를 당하거나 불안정한 체류상의 신분 때문에 피해자의 위치로부터 '구제'되지 못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주업자들은 국내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을 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제 3국에서 유입국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주시키면서 이윤을 만들어낸다. 이 산업은 모집책, 여행사, 이송담당자, 법률회사 등을 포함한 초국적 사업이 되고 있고, 이주제한 정책이 심화될수록 이주산업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결국 엄격한 이주통제 정책은 이주를 통해 거대한 폭리를 취하는 중개인들을 양산하고 있고 이들은 점차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갱스터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국가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이주업자들은 초국적 네트워크와 변호사, 자문단 등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가면서 '어두운 산업'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는 '정상적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 범죄는 특정 국가의 이주 정책의 성격, 이주 산업의 규모와 정상화, 특정한 이주자(예 결혼이주자, 가사 노동자, 성노동자 등의 여성)에 대한 '선호'를 통한 대규모, 강제적 이동와의 관계 안에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 초국적 브로커들은 각 국의 이주 정책의 허점을 활용하여 발 빠르게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고 있고, 인신매매적 피해자의 규모가 커지고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이주나 성매매와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인신매매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또한 필수적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준비 중인 〈특례법〉은 여전히 인신매매의 개념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제된 피해자로 설정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즉, 인신매매의 국제법안에 포함된 포괄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미국, 필리핀 법 등). 제 2 조의 정의 조항과 특히 2조의 성착취에 대한 해당 행위 등도 그 적나라한 구체성과 편협하게 항목화된 행위가 오히려 인신매매법이 내재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 회복의 가치 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성매매, 포르노,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 섹스 투어리즘, 강제 결혼 등(정미례 선생님 발표문)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2 법의 목적

본 특례법이 인신매매방지법이 갖춰야 할 3P(처벌, 보호, 예방)의 원칙을 잘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목적 조항인 제 1조도 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를 통한 예방이 강조되지만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의지는 별로 반영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이 점은 최근 인신매매 법에서 강조되는 각 국의 '수요'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주 중개업자를 포함한 인신매매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3조의 경우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형량이 기본적으로 약하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다른 나라 법 조항에 들어 있는 재산상의 압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제 32조에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범죄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고 이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3 피해자 구제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나 재통합 정책은 박수미 소장님의 해외 사례에 대한 글에서 나온 데로 피해자의 '보호'는 물론, 피해자의 '인권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특례법에 좀 더 담겨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를 '권리'를 갖는 한 인간으로 되돌려놓는 세심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국내와 국제법상에서 보장해주는 법이다. 가난이나 지역 가부장제의 압력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이주를 가는 '자발적 이주자'건, 재앙이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 등 구조적 강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이주'를 떠나는 이주자건 이주의 과정이나 유입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인신매매적 조건'에 놓이게 될 소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신매매 피해라는 명명체계에 따라 붙었던 선택(동의)이냐 강제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냐는 논리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이들을 수동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논리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확인부터 구제나 재통합 정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적 편견이 피해자 신분 확인 등을 포함한 조사 절차나 지원 관행 등에 내재화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의심'을 노골화하는 취조식의 조사나 위탁시설의 전문성 부족, 마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구제책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유도하는 구제 방식 등은 인신매매 방지법이 지향하는 인권 보호와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들이 가진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제대로 '청취'하거나 해결하지도 않은 채 기능적이고 조속한 해결책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피해자를 감정, 정서, 이성, 기술, 학력, 미래의 기획력과 열망을 가진 한 인간이라고 간주될 때, 이들의 역량 강화와 피해로부터 구제, 재통합의 과정에서 특례법이 어떤 기능을 해낼 것인가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지원과 재통합을 위한 표준화된 모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최선의 인권 보호적인 선택지를 결정하도록 피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는 것과 귀국(제 3국으로 이주 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보호 및 구제 규정이지만 이것만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아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 사회 복귀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의 귀환을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 등, 특례법이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를 유도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맞게 '가치 지향적인' 많은 대안들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 노력에 대한 조항 등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토론 2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토론

김인숙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 법률에서 처벌하지 못한 공백을 메우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새로이 규정하는 특별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2. 다만 인신매매 유형으로 '결혼'을 상정하여 결혼조건을 과장하고 왜곡한 경우도 위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구성요건의 명확성 및 형벌의 최소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지 의문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또 하나의 인신매매'유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 견 공감을 하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 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위 또는 과장된 결혼조건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한 자(실제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 등 상정)와 실제 결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공감을 받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예컨대 가난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이 많은 00에 사는 사람이 자신이 제법 땅도 있고 도시에서 혼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인신매매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하고 이혼을 하면 성착취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인지요?
   실제 위와 같은 경우 이 특별법에 의하여 고소를 하면 처벌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입증이 가능합니까?

   더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마치 결혼할 것처럼 한국에서 와서 어느 날 브로커와 사라지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을 처벌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만약 법이 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3. 성착취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사실 성착취라는 개념이 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신매매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성착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착취 개념 중 우선 가와 나의 반의사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인신매매규정에서 말하는 간음, 추행 목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하는 행위가 성착취에 포함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문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하였으나 그런 경우 모두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전체 법체계와 부합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4.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에 기존 법을 모두 포괄하였는데 이 특별법에서 빠져서 기존 법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토론 3 】

인신매매금지법안 토론문

조백기 사무국장 (탈시설정책위원회)

1 들어가며

› 지적장애인 인신매매 일당 검거

지적장애인과 수배자 100여명에게 빚을 지게 한 뒤 팔아 넘긴 인신매매단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13일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과 범죄수배자 112여명을 속칭 노예선에 팔아 넘긴 황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석하고 최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부터 부산·대구·마산 등의 생활정보지에 월 200만~4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을 서해안 새우잡이 어선원 등으로 팔아 넘겨 1억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광고에 속아 찾아온 사람들을 별도로 마련한 집단보호시설에 감금한 뒤 터무니없는 외상 빚을 지게 해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강매해 도주에 대비한 추적장치로 활용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4월 납치한 지적장애 2급 권모(27)씨의 행방을 찾던 해경에 덜미가 잡혀 해경의 추적이 이어지자 그해 7월 권씨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 지적장애인 성폭행범 징역 3년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고,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의 한 가게에서 술과 감을 산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감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시킨 10대들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박 모(17)양 등 10대 소녀 2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모(15)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0여 일 동안 지적장애 3급인 여중생 A(15)양과 B(15)양을 폭행하고 협박해 인터넷에서 접근한 남성들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대가로 받은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등과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에 나섰다.

› 지적장애인 유인, 공장에 팔아 넘길려던 40대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서울의 한 기차역에 있던 지적장애인을 섬지역 공장에 돈을 받고 넘기려 한 A씨(4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2층 대합실에 있던 B씨(22.정신지체장애 3급)를 KTX 열차에 태워 목포의 한 여관으로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신안의 한 섬지역 해산물 가공공장에 돈을 받고 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관에서 탈출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 지적장애인 56명 납치 인신매매 억대 갈취

지적장애인 등을 납치한 뒤 이들 명의로 대포폰과 대포통장,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인신매매범 일당 9명 중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는 13일 장애인 등 56명을 납치해 1인당 50만~1백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이모씨(38)와 장애인을 넘겨받아 이들 명의로 대포폰 등을 만들어 판매한 김모씨(34)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7월 성남의 지하철역 등에서 “봉제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적장애 3급인 송모씨(28·여) 등 장애인 56명을 납치해 3천3백60만원을 받고 김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김씨 등은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장애인을 남양주시의 한 농가 주택에 1~3개월간 감금해 놓고 이들 명의로 휴대폰 386대에 가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파는 수법으로 한대에 30만~35만원씩 모두 1억1천만원어치를 판 혐의다.

› 장애인 성폭행, 인신매매 4명 영장

충북 옥천경찰서는 21일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 모(37.경남 함안군 칠원면)씨에 대해, 유흥주점에 팔아넘긴 혐의(부녀매매)로 정 모(48.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 등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 모(31.여.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이 모(45.여.경남 울주군 언양읍)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9년 10월 중순께 지적장애인 H(28.여.충북 옥천군)씨를 4차례 성폭행한 뒤 정씨와 짜고 6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인신매매한 혐의다.

박씨와 이씨는 H씨를 99년 1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 등을 시킨 뒤 화대 등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장애인 여성 성폭행...성매매까지 강요

지적장애인 여성의 가족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치고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25살 심 모 씨의 가족에게 심 씨와 결혼하겠다며 접근한 뒤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7살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 씨와 함께 피해 여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5살 조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여성이 사리판단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지적장애 여성 감금…성매매 강요한 3명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K(2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A(20·여)씨를 달서구의 한 호텔에 감금한 뒤 자신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성매매를 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 명의 남자에게서 화대 3천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에게서 10만~15만원씩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시켜왔지만 12월 초 K씨가 탈출해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검거하게 됐다"며 "이들은 지적장애인인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할 때마다 심한 매질을 했다"고 말했다.

› 노예 할아버지, 법원 "증거 없다" 집주인은 무죄?

한 지적장애인이 25년 동안 청주 지역유지의 집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하고, 그 집을 나오기 전 8개월 동안은 차고에서 살았다.

어떤 모습으로 차고에서 생활했는지는 2009년 5월 5일 방송된 SBS의 SOS '차고에 사는 노예'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노예 할아버지라 불려지는 한수아저씨는 25년을 주민번호도 없이 살아왔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만한 어떤 꺼리도 갖지 못했고, 그 집의 노예로만 살았다.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전혀 문제제기할 엄두를 못 낼 만큼 그는 그 집의 머슴으로 당연시 여겼다.

2009년 9월 25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2010년 8월 18일 근 1년 만에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증거없음'과 가해자측 증인들의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배회했다'는 증언이 반영되었다. 25년을 그 집에서 노역해온 한수아저씨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되지 못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청주법원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한수아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번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차가운 차고에서 한겨울을 지내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집의 일을 돌봐주는 동안 학대는 없었는지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 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왔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ㅁ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강제로 쫓겨내려 한 사연이 장애인권단체와 언론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26] 지난 2007년에는 충북 옥천군 소재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시설생활인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27]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폐쇄적 공간인 생활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도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이 직면하게 되는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위협주기, 협박하기, 특권사용하기, 고립시키기, 경제적 학대, 약이나 개인적 원조ㅁ보조장치를 주지 않기, 장애를 비하한 언어적 조롱,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강제노동 등 다양한 형태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그 유형의 광범위성과 피해의 심각성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된 장애인은 대부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하기 어렵다. 학대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어렵고 병원과 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고,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다시 시설로 보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폭력적 관계를 떠나 보호와 옹호를 받고자 할 때에도 보호 프로그램이 사실상 미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경찰이나 사법부를 통한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도 경찰이나 검사, 판사 등이 정신장애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조차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과 학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학대피해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장애로 인해 당사자 스스로 학대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는 등 스스로 폭력과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학대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적극적인 보호 및 권리옹

---

26) 한겨레21, 2010년 3월 8일

27) 생활인이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때리려고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5분간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가족들은 평소 간질을 앓고 있다가 그로 인해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시설측의 설명만을 듣고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이 지나 제보를 통해 사건 경위가 밝혀졌고 당시 해당 시설에서 발생했던 성폭행과 시설비리도 드러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호를 통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각종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사법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막대한 시간, 노력, 경비 등이 소요되는 만큼 어려운 생존여건에 있는 장애인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사법절차에 대한 물리적 장벽, 정보나 기술에 있어서의 장벽 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있어 재판청구권이 형식적인 데 그치지 않으려면 장애인이 쉽사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절차에서의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법적 권리도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에서 사법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또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4항). 그리고 사법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6조 6항).[28] 나아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인신 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제26조 제7항).

한편, 형사소송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농아자이거나(제4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제5호),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3조의2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제2항).

---

28)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은 2010년 5월 11일 제3차 일부개정시 수정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또한 동법은 피의자신문과 피고인신문의 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제244조 제5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동법 제276조의2 제1항에서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항들은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에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동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ㅁ실시하여야 한다(제1호). 그리고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동조 제2호). 장애인 피하자가 동성(同性)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동조 제3호),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ㅁ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제4호).

또한「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55조에서도 "농아자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나아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성폭력피해아동등조사지침」(대검찰청 지침) 제8조에서도 다음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제7조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 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훈령 및 예규라는 형식으로 인하여 대내적 구속력만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형사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 강화의 차원에서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법령으로 규정하되, 산재해 있는 여러 규정들을 통합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각종의 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직도 장애인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08년의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피의자의 처우 실태 연구를 보면,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모든 형사절차상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들도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ㅁ정신적 특성이나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보조인, 수화통역사, 의료품 등이 제공되지 않고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장애인 피의자들은 법률적 정보를 제공해줄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의 불성실한 변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법기관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물적 여건이 완비되거나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인 피의자들의 신체적ㅁ정신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무관심과 교육 부족, 그로 인한 행정적ㅁ법적 지원의 불충분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29]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4곳에서는 모두 수사와 행정심판 및 조사에서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문을 고지하고 있으며, 장애특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시 편리한 자료제공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시 수화통역 제공에 대해서는 각각 25.0%와 75.0%로 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30]

---

29) 이영미ㅁ탁종연,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차별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2008), 제9권, 77-111쪽 참조.

30) 보건복지부,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결과 설명회 자료집』, 20쪽.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시각장애인을 수사할 때는 조사내용을 점자프린터를 통해 점자로 인쇄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문서자동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조서내용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인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수화통역사를 반드시 부르도록 하고, 그 통역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법제도는 국내에서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항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사법절차 관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형사절차상 의사소통의 곤란, 편의 제공의 불충분, 법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31]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약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할 여지가 있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 저항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벌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인준강간이다. 강간죄가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경우의 간음을 처벌한다면 장애인준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성립된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저항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더 엄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최근까지 법원은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심신미약자간음죄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준강간죄의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증장애만을 '항거불능'으로 보고자 하였다.[32]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심신미약자간음죄는 위계, 위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불필요한 장애인준강간죄가 중증장애에만 적용된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장애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수월하게 성폭행할 수 있었던 사례는 적용할 조항이 없게 된다. 저항 없음을 동의로 간주하기 이전에 저항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

31) 김정혜,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인권오름」(인권운동사랑방, 2010.11.04.) 참조.

32) 지난 2005년 5월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사건에서 검찰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와 명백한 성폭력 사건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간이나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기간 1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판단이다. 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증언은 초동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증거와도 맞아떨어져야 한다. 법언어는 범행 날짜와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주변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고 사리에 맞을 것을 요구한다. 제3자 증인이나 다른 증거가 부족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장애인에게도 이는 쉽지 않은 일인데 장애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숫자개념이나 사건의 선후관계, 인과관계 개념이 약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의 요구에 맞게 피해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추상화된 표현의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묻는 것에만 답하는 특성은 진술번복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 대한 협소한 해석과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몰이해는 검찰 등 사법기관이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비장애인 남성 중심적 관점으로 인해 그 범죄의 심각성과 장애/장애인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등 사법기관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장애특성과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성과 반인권성 및 시설장·종사자와 시설거주인간의 위계질서, 폭력의 일상화·내면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특수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33]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1항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들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법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특히 연령을 고려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에게도 사법 절차에 있어지난 2005년 5월 김포 〈사랑의 집〉 시설 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사건에서 검찰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와 명백한 성폭력 사건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간이나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기간 1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등한 기회의 제공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고 하여, 제1항의 사

33)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8번째의 국제인권조약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사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대체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나 법률구조제도가 요청된다. 한편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법기관의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차별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사법기관별 장애인 인권보호지침 마련, 사법절차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이 요청된다고 본다. 특히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사법절차상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점자자료, 문서자동읽기 프로그램, 수화통역 서비스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각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안내인,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점자 문서, 큰 활자체, 음성안내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 장애인에 비해 혼자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을 위해서 활동보조인이나 안내원을 지원하거나 여러 사법절차 및 각종 문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된 사법절차 안내문이나 안내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과 장애인단체를 연계해주도록 하고, 신뢰관계인의 조사과정 참여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이 큰 부담 없이 법률상담과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영국의 장애인법률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한편, 독일의 경우처럼 제3자인 장애인단체들이 행정법적 혹은 사회법적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

인신매매금지법안 제2조(정의) 나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 '장애인'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상정하고 있다.

법안 제14조 재3항의 미성년자, 외국인 등과 함께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그 대상범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와 '법무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 제2조 정의규정에서의 장애인의 범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일치시키거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34]과 장애인차별금지법[35][36], 국가인권위원회법[37] 등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정의에 대해 신체적ㅁ정신적이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의학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혹은 직업생활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장애인'의 정의와는 달리 지금까지도 의료적 진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장애'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 출발점은 차별 내지 평등권 침해라고 하는 인권적 관점이어야 한다. 따라서, ① 신체·정신적 발생 요인, ② 사회·문화적 발생 요인, ③ 발생 기간, ④ 평등권 상실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발생요인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② 발생시간에 있어서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하여야 하며, ③ 그 결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평등권 등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

34)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서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5)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조에서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경우만 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36) 애초 200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2004)가 제시한 법안 제2조(장애)에서의 '장애' 개념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차이를 이유로 장·단기간 발생하여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사회적 태도나 물리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한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이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장애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장애 정의는 분명히 사회정치적 접근법(sociopolitical approach)에 입각해 있었다.

3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7호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는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간의 충돌이라 볼 수 있는데, 복지적 관점에서는 특정된 장애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적 관점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때 그러한 차별의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기간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38]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13만 7천 226명이다.[39] 2005년 이후 3년 사이에 등록장애인수가 약 43만 8천명이 늘어나 전체 25.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 따라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기존의 장애인등록판정체계를 개편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장애 상태와 등급의 심사를 의무화하여 전국적으로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40] 이는 정부가 장애인연금제도 시행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등에 앞서, 장애등급판정체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의 보도자료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36.7% 가량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등급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는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상의 장애 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74.3%(5,589건), "장애등급 판정 기준 미 부

---

38)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의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주기로 6차례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2007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2008년에 일곱 번째 장애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년 장애인실태조사」(2009.4), 1-500쪽 참조.

39)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4.59%이며 다른 나라인 독일(10.2%), 미국(19.3%), 영국(19.7%)의 장애인 출현율과 비교하여 약 25%~50% 수준의 낮은 출현율이지만 일본(4.7%)과는 비슷한 장애인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범주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독일,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이 2-3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과 달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에 따른 장애의 판정 기준을 지나치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외국 입법례의 수준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통상 장애계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각국의 장애인 출현율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를 인구수 대비 10%인 약 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등록/심사제도, <http://www.m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201>, 검색일: 2010.11.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합"이 14.0%(1,052건)로 두 유형이 전체의 88.3%(6,641건)를 차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의 많은 의료인들이 그간 진료를 해온 환자가 신청인으로 요구할 경우 그간에 쌓인 유대관계 등으로 장애등급을 올려주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며,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41]

하지만 장애인등급제를 기준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제도, 활동보조지원사업 등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그에 따른 서비스를 판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장애계는 물론 학계, 의학계에서도 '가짜 장애인'을 가려낸다는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명분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한 규제강화로 간주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42] 특히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거부하는 등 장애계의 거센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장애등급심사 결과 36.7%의 장애인이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수십만원의 장애진단 비용부담이 강요되고,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끊기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여 장애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43] 급기야 9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납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개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 고용, 소득,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복지 영역의 욕구를 장애등급 한 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실제로도 장애인에게 굳이 등급을 매기지 않더라도 복지 영역별로 장애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를 채용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제를 똑같이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런 방식으로 별 무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 '장애인 지방센터'(La 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에서

---

41)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제도 국민적 신뢰 회복 시급", 2010년 6월 17일자 보도자료 참조.

42)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보고서(2010년 6월 28일)에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장애평가기준은 신체상의 이상 여부를 의사가 확인하고 진단하면 바로 장애의 등급이 결정되는 의학적 모형으로 장애 당사자의 직업이나 능력 또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체나 정신의 의학적 장애만으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단 장애인복지법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국가배상법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WHO에서 최근 제시한 장애의 개념에는 단순히 신체나 정신에 의한 장애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환경에 의한 장애까지도 폭넓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적 모형에 의한 장애평가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환경을 고려한 장애평가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평가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파악하여 사회복지서비스로 이어지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43)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 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 2010년 7월 30일자 보도자료 참조.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의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종합사정팀이 신청인의 장애 판정 및 서비스 욕구 사정 등을 하면, 그 작성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권리 및 자립위원회'(Les Com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ees)가 보건의료 서비스, 각종 수당, 세금 면제, 장애인 카드, 옹호·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장애등급제를 개선하거나 나아가서 폐지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의 자격 기준이 되는 장애의 정의·분류·측정을 재고해 보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일이 될 것이다.[44]

이처럼, 198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는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 그리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여탈을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고유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몸을 낙인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관련한 여러 입법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철저히 의료적 기준만을 적용해서 규정하고 판단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0년 장애인등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짜 장애인'을 잡아낸다는 취지로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오히려 의료적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환경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함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가짜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구시대적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미흡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률들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라는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 있다. 이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의 저해'라는 사회적 모델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인권(복지)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향후 한국의 장애의 판정기준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수준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3. 인신매매피해자

인신매매금지법 제2조항에서는 인신매매, 성착취, 강제노동 등 동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개념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안 제23조의 인신매매 범죄 피

44) **조한진**, **앞의 논문**, 3-4**쪽**.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해자와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 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매매 범죄 피해자,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열거된 '인신매매피해자' 정의규정에는 성착취,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물론, 제2조 제1항 1호 나목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를 '인신매매'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직접적인 정의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2조 제1항 1호에서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1호 '인신매매', 2호 '성착취', 3호 '강제노동' 등 동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피해자를 '인신매매피해자'라고 정의하거나, 제2조 제1항 4호 '인신매매피해자' 규정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신고의무자

인신매매금지법안 제12조 제1항에서 동법의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법의 긴급전화센터와 보호시설,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인신보호법의 수용시설, 출입국관리법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에서는 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해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열거된 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45]은 제외되어 있다.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가장 극단적인 실례가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사망 등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들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규정이라 하겠다. 아울러, 그 신고의무자를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한정하고 있는

45)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수용·보호·치료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과 학교 등 교육기관,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에게까지도 그 신고의무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개인이나 장애인권단체에게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인신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인신매매금지법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안 제13조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과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안 역시 인신매매 범죄 예방교육의 대상자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 모든 입법·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중앙기관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신뢰관계인의 동석

인신매매금지법안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법원과 수사기관이 인신매매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반드시 동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도 앞서 살펴본 '장애인'의 개념정의에 있어서와 같이 2호, 3호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와 '법무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 외국인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신매매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사법기관에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발달·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를 명확하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라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법기관 등의 직권에 의한 신청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법기관 등이 직권으로 장애인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케 하여 조력받을 권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의적 판단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같이 명확하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대상범위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거나, 성폭력과 이주·인권·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피해자 개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주·인권·장애인 단체 및 이주·인권·인권 전문가’를 인신매매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재판과 수사과정에서의 증언과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등의 규정처럼 인신매매피해자의 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진술의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진술녹화는 의무이고,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은 문자조서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문자조서만을 활용하고 있다.

7.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인신매매금지법안은 제1조에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신매매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아가 인신매매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제17조에서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종료시까지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금지 규정을 두고, 검사뿐만 아니라 인신매매피해자 당사자 및 그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이 직접 강제퇴거의 유예 및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귀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강제퇴거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범죄와 관련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이외 인신매매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중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동법안은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해 강제퇴거 유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예 등 소극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9조에서는 강제퇴거 유예 또는 보호일시해제라는 소극적인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그 기간동안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사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 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20조 귀국지원, 제21조 의료비 지원, 제22조 생계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법안 제11조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제14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5조 심리의 비공개, 제18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수사ㅁ재판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7조 강제퇴거 유예 또는 보호일시해제라는 소극적 보호와 제19조 체류자격 부여와 같은 적극적 보장, 제18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제20조 귀국지원 등의 보호조치 규정은 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다. 우선, 법원과 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인신매매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 통역은 물론이고 그의 모국어로 번역된 문서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호와 자립을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의 운영, 인신매매 상담과 치료, 취학 및 취업 지원 등 보다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즉, 시각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안내인,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점자 문서, 큰 활자체, 음성안내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 장애인에 비해 혼자서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장애아동과 장애노인, 지적·발달·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나 안내원을 지원하거나 여러 사법절차 및 각종 문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쉬운 말과 그림으로 만들어진 사법절차 안내문이나 안내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신매매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게다가, 사법절차상의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사후권리구제적 보호조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 사전예방적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8. 기타

이외에도 제5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3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종합보고서 작성,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제6조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제9조의 인신매매행위, 인신매매대상자를 모집, 운반, 은닉하는 행위, 인신매매행위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외에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제공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46]

46) 1950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제2조에서는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한 자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토론 4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관련 – 이주노동 영역 중심 –

최현모 사무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1 방치되는 노동권 무시와 인권침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

최근 한 국내 대기업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에 대해 가해진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이주노동자인권단체의 폭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을 받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비난 받아 온 산업연수제가 지난 2007년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사실상 산업연수제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된 노동자를 국내로 데려와 기술을 전수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번 폭로된 사례에서처럼 기술 연수는 허울일 뿐 그저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데도 브로커들이 거액의 입국비용을 받고 ‘신분 세탁’을 한 뒤 입국시키는 것도 여전했고, 브로커에 건넨 입국비용에 든 빚을 갚으려 연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자신이 연수생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입국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연수생에게는 금지된 잔업과 특근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을 시키고, 이탈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임금 일부의 강제 적립과 신분증 등의 압류, 감금에 가까운 감시를 하는 등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도 여전했다. 2007년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수는 올해 5500여명 수준이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의 처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연수생에 대한 차별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들 연수생들에 대한 권리침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8개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권 무시가 정부에 의해 비호되고 있는 셈이다.

2 합법적 예속강요, 고용허가제

지난 10월 말 현행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구체적으로는 횟수의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공개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 이는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막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하 모든 업종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명백한 위법(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중대한 노동법위반, 심한 폭행 등)과 사실상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폐업, 상해 등)에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동할 수 있다. 제조업이 아닌 농업이나 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는 업종을 넘어선 이동 또한 금지된다. 산업특성 상 농한기나 조업 휴지기가 오는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지정한 다른 농장이나 조업장에서 임시적으로 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농업, 어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야근, 특근 등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나 주차, 월차 등에 관한 노동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 규정에 의해 건강 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주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를 제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수도 없다.

그런데 사업주는 전화 한통 혹은 문서 한 장으로 간단히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야근, 특근, 휴일근무 등 연장근무를 시키는 사업주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했을 때, 건강보험 미 가입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가입요구를 했을 때, 계약과 다른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휴가를 요구했을 때, 계속되는 임금 미지급에 항의를 했을 때, 작업장 내 차별과 멸시, 사소한 시비와 폭행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항의를 했을 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이주노동자를 사업장 이탈로 신고함으로써 간단히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업무처리에 있어 전후사실 관계의 확인 등과 같은 절차는 별 의미가 없다. 그저 사업주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충분하다. 즉,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밉보이면, 이주노동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즉시 퇴출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무수한 차별과 멸시에도 그저 참고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다른 선택은 곧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어 인권사각지대를 전전해야 하는 '불법'체류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들의 법적지위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속은 법에 의해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3 기만과 착취로 파괴된 삶, 송출에서 추방까지

앞서 언급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의 실태 고발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일하고 있는 연수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않은 채 입국했으며,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자신이 받게 될 급여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을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 산업연수제 하에서 지적된 핵심적인 문제점도 송출 과정에서의 막대한 송출 수수료와 한국 입국 후 일하게 될 사업장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입국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공식적인 입국 비용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법정 비용에 더해지는 웃돈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국과정에서 체결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작업장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입국하는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정보가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채, 노동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입국 후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 종속된 신분상의 약점(사업주에의 예속, 사업장 이동 제한 등)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불만을 표출시키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가해지는 권리침해를 묵묵히 감수하거나 아니면 이탈이라는 위험스런 선택으로 불법체류자의 길을 가야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조장되고 있다. 일단 미등록(불법)으로 전락하는 순간, 이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야근 특근 등의 무리한 작업요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기피 등과 같은 법적 지위의 불안함을 이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용한 노동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추방시키는 파렴치와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조사과정에서 노동부 공무원이 출입국에 통지하여 권리구제조차 없이 단속 추방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

4 이주노동의 과정에 비추어 본 '인신매매처벌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취업 및 체류자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ㅁ약속하여 대상자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안 제2조 제1항 제1호)

본 법안이 규정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이다. 앞서 언급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법과 제도에 의해 비호되는 강제노동과 착취의 연속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규제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사업주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오히려 법적 제도적 비호 속에 조장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를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 법안이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본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보면 '...강제노동...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를 송출하거나 고용하는 행위의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표면상 양국정부간의 MOU협약에 따른 관리감독하에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양자 간 노동계약이라는 합의의 형식을 거치는 이주노동자의 입국과 고용과정에서 '...강제노동...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것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이냐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본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정의 가운데 '...대상자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경우 '인계하는 행위와 인계받는 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상의 규정에 의해 '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고용허가제의 경우는 이주노동자의 선발과 계약 체결 그리고 인계행위가, 해외에서는 MOU를 통해 상대국 정부 혹은 정부의 위탁기관에 의해, 그리고 국내에서는 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업장의 이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계약체결 또한 노동부의 알선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후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그리고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 비호되고 있는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제기는 법 논리적인 차원의 가능 불가능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실제 적용과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가능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강제노동...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와 '...대상자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가 결과적인 인권침해와 강제노동의 발생이라는 상황만으로도 추정 혹은 간주되도록 하는 추가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법안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주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노동권무시에 대한 규제라는 면에서의 본 법안의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고 본다. 동시에 고용허가제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등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법률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토론 5 】

아동 보호의 입장에서 본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안

이현숙 상임대표 (탁틴내일)

한국에서 아동 인신매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성착취'이다. 그리고 아동 대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상당부분 다루고 있으며 성매수를 유인하기만 하여도 처벌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제도, 취업제한제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이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을 교육을 목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로 처우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특례법, 성매매 방지법 등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루고 있긴 하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신종 변종 성매매의 발달로 아동 대상 성매매 역시 인터넷을 매개로 개인 간 거래의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적발되어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숙식 제공 대가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동거하며 성관계를 거래하기도 하고 나아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미성년자가 성매매 하는 것을 방관하는 '동거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 동거는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성매매는 본인이 알아서 한 것이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성매매 방지법으로도 다루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보호 특례법'의 제정은 이렇게 국제 기준에 따라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안에 의하면 인신매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착취 또는 영리 목적이 존재, 수단 행위, 인신의 인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단 행위 없이도 인신매매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 적출 등 착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를 인계하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거나 인계받는 행위"로 완화한 것 또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의 처벌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성착취'의 개념을 '성매매'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성적 착취 행위가 포괄될 수 있도록 확장 규정,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ㅁ약속하고 위 가목으로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는데, '동거형 성매매'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연령기준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권리협약의 기준 등에 따르면 적절하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과의 연령 기준이 다르므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연령 기준과 맞추는 것이 법 집행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제12조 신고의무와 관련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특례법에 명시한 신고의무 기관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참고로 아동의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방지를 위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을 소개한다.

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 기구, 인권 단체, 민영 부문, 시민 사회, 아동과 청소년이 모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 금지, 중단하며 이에 희생된 아동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 계획의 대상과 목표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방지를 위한 세계대회'가 3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2008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3차 세계대회 참가자들은 성 착취의 목적을 포함해, 인신매매를 다루는 법과 프로그램에서는 빈번하게 아동 피해자라는 특별한 신분과 특별 보호에 대한 권리가 반영되지 않고 또한 아동 피해자들이 다시 완전하게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환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을 돕는 적절한 모든 원조를 보장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근거로 하여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인신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방지를 위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

○ 지연 없이, 늦어도 2013년까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와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승인.

○ 관습적 성적 동의 연령이나 혼인 연령에 관계 없이, 현존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행위를 각자의 사법권 내에서 이를 정의하고, 금지하며 유죄로 함.

○ 능동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관련된 역외 법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선도적 법 집행 기관 지정.

○ 경찰 수사팀 내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다루는 특별 팀/아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경찰/사법 집행관에게 특수한 교육을 제공.

○ 2013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근절하기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가능케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모금 기관, UN 사무소, NGO, 민영부문, 노동자 혹은 고용자 단체, 언론, 아동 관련 기관, 그리고 이 밖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과정 확립.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 수립

○ 관광과 여행에 종사하는 회사, 운송과 금융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광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

○ 2013년까지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혹은 그렇다고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보고, 후속 조치, 그리고 지원을 위한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 확립

○ 신체적, 정신적인 완전 회복과 사회로의 안착에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 심리적 지원을 제공 ; 고도로 훈련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전문가 팀에 의해 제공

○ 소수민족, 원주민, 망명중인 어린이 혹은 보호 시설에 수용중인 어린이 등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어린이’처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에게 모두 미치도록 해야 함.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 성착취로부터 아동 보호에 있어 미디어가 그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광고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물화하는 것을 포함해 미디어의 잠재적 해악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이동통신사, 검색엔진, 이 밖의 연관된 관계자들에게 아동 포르노그라피 웹사이트와 아동 학대 이미지를 보고하고 제거할 것을 의무로 하는데 법적 수단 강구, 결과를 감독하고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표 개발

○ 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 매춘, 성적 동의 연령, 그리고 형사책임능력을 포함하여 국제 규범에 맞도록 국내법 일치

◌ 아동을 매춘으로 내몰아 성관계에 대한 지불을 하거나 혹은 아동으로부터 성적인 서비스를 얻기 위한 다른 어떤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법상 위법 거래로 명시

◌ 국제 기구나 기준의 의무에 부합하여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채택해야 하며,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고려할 것

◌ 아동을 인신매매의 취약성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한 신중한 고찰과 이에 관한 회담에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동원

◌ 국경지역 뿐만 아니라 국경 내 아동 인신매매를 다루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립.

◌ 인신매매 사건 조사에서 이에 희생된 아동을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로서 처우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합동 본부 설치

◌ 인신매매된 아동들에게 아무런 지체없이 보호자가 지정될 것을 확실히 하는 법적 조치나 이 외 다른 수단이 취해져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된 아동들에 대한 등록과 문서화에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 확립. 또한 인신매매된 아동들이 완전히 영구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보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경제적, 심리-사회적 지원 보장

◌ 아동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인신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만한 법제(혼인, 입양, 출생 등록, 시민권 부여, 난민이나 기타 신분에 관한 법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지원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메 모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

메 모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www.haansoft.com)